

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(제43조의6제1항 관련)

1. 사무실

- 가.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- 나.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, 긴급전화를 설치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다. 사무실은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적장애인, 자폐성 장애인이 공간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.
- 라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마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2. 상담실

- 가. 상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상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나. 상담실은 16.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.
- 다. 지적장애인, 자폐성 장애인을 상담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갖추고 이를 비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라. 상담실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.

3. 교육실

- 가. 5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, 학대행위자,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- 나.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.

4. 대기실

가. 9.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장애인, 활동보조인이나 가족 등 장애인과 동행한 사람, 수어통역사 등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나. 대기실은 아동이나 노인 등 이용자의 연령대와 장애를 고려하여 편안한 구조와 분위기로 설치되어야 한다.